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3. 17 선고 2020가합5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영식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안

담당변호사 임재혁

변론 종결 2022. 3. 3.

판결 선고 2022. 3.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7,397,25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7.부터 2022. 3.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57,272,98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경 원고의 다른 채무 변제를 위하여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C 외 2필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피고로부터 대주들을 소개 받아 돈을 차용하고, 피고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아래 표와 같이 130,000,000원(이하 '이 사건 중개수수료'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2014. 10. 2.	피고, D	600,000,000	42,000,000
2015. 8. 27.	E	700,000,000	28,000,000
2015. 10. 29.	F, G	700,000,000	21,000,000
2016. 4. 7.	피고, D, H	2,000,000,000	30,000,000
2017. 9. 20.	F	300,000,000	9,000,000
합계	130,000,000		

나. 원고는 2017. 2. 21. D에게 차용한 돈 중 일부인 400,000,000원을 변제기 이전에 상환하면서,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중도상환수수료 명목으로 8,000,000원(이하 '이 사건 중도상환수수료'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7. 4. 28. D와 H으로부터 차용한 돈의 변제기가 도과한 뒤, 피고의 요청에 따라 D와 H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79,200,000원(이하 '이 사건 연장수수료'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피고는 이를 D에게 57,600,000원, H에게 21,600,000원씩 각 전달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8. 9. 11. 피고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하였고, 2019. 10. 14. 피고는 무등록대부업의 영위 및 대부업법에 위반하여 대부중개수수료를 수령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8개월 및 2년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단2660),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5, 16호증, 을 제1, 2,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 1) 피고는 대부업법을 위반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중개수수료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중도상환수수료 및 연장수수료를 각 지급 받았으므로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 2)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 받은 금액의 합계 217,200,000원(=130,000,000원 + 8,000,000원 + 79,2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40,072,988원(=이 사건 중개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 연장수수료의 각 지급일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20. 1. 6.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합계액인 257,272,9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 1) 피고가 이 사건 중개수수료를 수령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의 중개행위로 원고는 금전을 차용하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는 이 사건 중개수수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 2) 피고는 이 사건 중도상환수수료를 D에게 전달하였다.
- 3) 피고는 원고로부터 원금을 지급받기를 원하는 D, H을 대리하여 변제기한을 연장해주는 조건으로 이 사건 연장수수료를 지급받아 D, H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며,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연장수수료를 편취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중개수수료에 관한 판단

- 1) 피고가 대부업법 규정을 위반하여 이 사건 중개수수료를 원고로부터 지급 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다음으로 피고가 불법행위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대부법업 제11조의2 제2항은 대부중개업자 및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은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6호는 위 제11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 중개수수료를 받는 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대부업법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대부중개업자 및 미등록대부중개업자가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것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중개수수료 수령 행위는 위법하고, 원고는 대부업법 규정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중개수수료를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이 사건 중도상환수수료에 관한 판단

1)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중도상환수수료를 지급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증인 D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D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중도상환수수료를 전달받은 사실이 없으며,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D에게 전달할 의사 없이 이 사건 중개수수료를 원고로부터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중도상환수수료 수령 행위는 피고가 D에게 이 사건 중도상환수수료를 전달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중도수수료를 수령한 것으로,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중도상환수수료를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연장수수료에 관한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증인 D, H의 각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연장수수료 지급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연장수수료는 D, H에게 각 57,600,000원과 21,600,000원씩 전달되었고, D, H도 이를

원고가 변제기한을 연장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② 원고도 D, H에게 차용금 원금을 변제하는 대신에 이 사건 연장수수료를 지급하고 D, H으로부터 변제기를 연장받을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연장수수료를 최종적으로 대주인 D, H에게 지급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피고는 원고와 D, H 사이를 중개하고, 위 돈을 D, H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따라서 원고가 변제기 연장의 대가로 지급한 이 사건 연장수수료를 대부업법 규정에 따라 원리금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이 사건 연장수수료를 피고에게 지급한 행위는 D, H으로부터 변제기를 연장받을 의사에서 한 행위로 볼 수 있고, 피고로부터 기망당하여 위 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중개수수료와 이 사건 중도상환 수수료의 합계인 138,000,000원(=130,000,000원+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각 금액을 지급 받은 날¹⁾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20. 1. 6. 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별지 지연손해금 계산표 기재와 같이 계산한 금 29,397,256원의 합계액인 167,397,25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도달일 다음날인 2020. 1.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3.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지연손해금인 29,397,256원에는 다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는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므로(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59237 판결 참조),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용호

판사김현영

판사석지성

별지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불법행위 성립일임이 원칙이고, 불법행위에 있어 위법행위 시점과 손해발생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발생 시점이 기산일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다97426 판결 참조), 이 사건 중개수수료 및 중도상환수수료를 피고가 각 수령한 날이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 된다.